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20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개요	1
II. 총괄 검토	6
1.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비교	6
2. 관련 제정안 논의 경과 및 검토 의견	12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8
III. 주요 내용별 검토	20
1. 목적	20
2. 정의	22
3. 국가장애인위원회, 지역장애인위원회	29
4. 장애인권리보장의 날과 장애인권주간	37
5. 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 조치 등	39
6. 장애인의 권리보장	44
7.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54
8. 국가장애연구원,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57
9.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관련 사항	62
10. 단체소송 등	81
11. 방송 편성 등	88
12. 장애서비스 이용 및 권리 보장	91
13. 부칙	110

I. 개요

1.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안(의안번호 제52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47인
- (2) 제 안 일 : 2024. 11. 4.
- (3) 회 부 일 : 2024. 11. 5.

나.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률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 맞춤형 복지 실현,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장애인 지원에 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권리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

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의 심의조정, 장애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심사청구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7조).
- (3) 지역장애인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각 법령에 따른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기한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류 사회 내에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정책의 기획·추진,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고, 해당 정책·법령·예산 등이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 (5) 존엄성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 사법접근성의 보장,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화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36조까지).
- (6)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38조 및 제40조).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권리옹호 및 복지의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연구원을 설립함(안 제44조)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 (9)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원칙, 업무 범위, 책무, 사법경찰관 파견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 (10)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확인되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단체소송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 (11)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애서비스 유형, 장애서비스 제공량을 판정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장애서비스를 개인별지원

계획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82조 및 제83조).

- (12)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자립생활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장애인 발견 및 지원, 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 교육권 보장, 참정권 보장,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 권리 보장, 방송 접근권 보장, 의사소통 권리 보장,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체육활동 권리 보장, 재생산 권리 보장, 고령장애인 지원, 돌봄·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등 다양한 장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4조부터 제106조까지).

II.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비교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총 7장 1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적절한 복지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 여러 제도, 절차 및 관련 기관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제정안은 그간 장애인 관련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 온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내용 및 구성 체계에서 있어서 아래와 같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의학적 판단기준 아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 예산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장애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실시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였음.
 - 제정안에서는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 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등 장애인의 개별 권리 및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장(제2장 장애인의 권리보장, 제5장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에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권리옹호 및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체계적 조사·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장애인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그 목적 달성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 집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그 관련 업무 수행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아 규정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로 그 범위를 확대·개편하여, 이에 관한 예방, 교육, 홍보, 신고 접수, 상담,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비영리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와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행위 및 인권침해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 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제정안 체계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3조(국가장애인위원회)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4조(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6조(사무처)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7조(지역장애인위원회)
제8조(차별금지 등)	제8조(사회보장급여 결정에 대한 조정 및 권고)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장애인권리보장의 날과 장애인권주간)
제10조(국민의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1조(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 조치 등)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2장 장애인의 권리 보장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존엄성의 존중)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4조(법 앞의 평등 실현)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5조(고유성의 보장)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17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8조(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9조(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20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21조(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제20조(교육)	제22조(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제21조(직업)	제23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4조(정보접근권 및 의사소통의 보장)
제23조(편의시설)	제25조(사법접근성의 보장)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26조(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7조(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28조(출산·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29조(가족 및 가정 구성의 권리 보장)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30조(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제27조(주택 보급)	제31조(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32조(장애노인의 권리 보장)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33조(훈련 및 재활의 보장)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34조(통계와 자료 수집)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5조(다중적 차별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제36조(소수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원 강화)
제3장 복지 조치	제3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1조(실태조사)	제3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8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9조(장애인정책책임관제도의 운영)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40조(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41조(장애인지예산의 배분·조정 등)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제42조(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43조(장애인단체의 지원)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44조(장애 관련 연구의 진흥 등)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5조(법제와 관련된 조치와 자원 조달 방안 마련 등)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제46조(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등)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4장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옹호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47조(금지행위)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48조(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의무 등)
제36조 삭제	제49조(불이익조치의 금지)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50조(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 등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51조(긴급전화)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52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52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운영)
제41조(자금 대여 등)	제54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 등)
제42조(생업 지원)	제55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책무)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56조(사법경찰관의 파견 등)
제44조(생산품 구매)	제57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45조 삭제	제58조(전속관할)
제45조의2 삭제	제59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6조(고용 촉진)	제60조(소송허가신청)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61조(소송허가요건 등)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62조(확정판결의 효력)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제63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49조(장애수당)	제64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대한 안내)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65조(평가 및 심의)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66조(권리침해 모니터링 등)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7조(고소에 대한 특례)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68조(신고 및 조사)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69조(응급조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70조(조사 후 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71조(법원의 조치)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72조(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3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및 심리)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74조(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등)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75조(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제76조(권리침해 실태의 보고 등)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77조(장애인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8조(비용의 청구)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79조(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등)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80조(방송 편성 등)
제59조의2 삭제	제81조(장애인 권리침해 예방교육)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장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82조(장애서비스 지원의 원칙)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83조(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	제84조(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85조(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제59조의8(보호인의 선임 등)	제86조(노동권 보장)
제59조의9(금지행위)	제87조(자립생활 권리 보장)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88조(건강권 보장)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89조(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91조(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92조(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93조(교육권 보장)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94조(참정권 보장)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95조(이동권 보장)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96조(정보접근 권리 보장)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97조(방송 접근권 보장)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98조(의사소통 권리 보장)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99조(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보장 등)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100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101조(체육활동 권리 보장)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102조(장애의 발견과 국가의 지원)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103조(장애인의 재산산권리 등)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교육 등)	제104조(고령장애인 지원)
제61조(감독)	제105조(돌봄·주간활동지원)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106조(장애인 가족지원)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제6장 보칙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107조(권한위임 등)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10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7장 벌칙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109조(벌칙)
제66조 삭제	제110조(양벌규정)
제67조 삭제	제111조(과태료)
제68조 삭제	부 칙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1조(시행일)
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5조(보수교육)	
제76조(자격취소)	
제77조(자격정지)	
제78조(수수료)	
제8장 보칙	
제79조(비용 부담)	
제80조(비용 수납)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1조(비용 보조)	
제82조(압류 금지)	
제83조(조세감면)	
제83조의2(청문)	
제84조(이의신청)	
제85조(권한위임 등)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9장 벌칙	
제86조(벌칙)	
제86조의2(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88조의2(가중처벌)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9조(양벌규정)	
제90조(과태료)	

주 1): 음영 표기된 조문은 보칙과 벌칙 규정을 제외한 실체규정 중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한 조문

2. 관련 제정안 논의 경과 및 검토 의견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그간 장애인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손상에 중점을 둔 의료적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 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부재, 수요자를 배제한 공급자 중심 전달체계 등 변화하고 있는 장애 패러다임과 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¹⁾

이에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를 통해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관한 국회 논의 지원을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현행법의 체제에 대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사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종견해를 제시한 바 있음.²⁾

□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새로운 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복지 총괄법인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개편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동

1) 남궁은. (202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월간 한국장총, Vol.429.

2)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는 2019년 3월 제출되어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채택

시에 논의되어 공청회 1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3회를 거친 후,³⁾ 그간 발의된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논의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제21대 국회 관련 제출 법안 >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27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284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34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8025)	「장애인기본법안」 (212448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316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284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341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8024)	-

주 1): 괄호안은 의안번호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 후, 정리

□ 제정안은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장애인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닌 동정·시혜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 국회에서 2008년 12월 비준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3)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11.24.),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2.4.26.)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11.21.)

장애 개념의 확대,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장애인정책 추진체계 개편, 장애인지예산 및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국가장애연구원,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장애인 권리침해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권리옹호센터, 단체소송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첫째, 제정안은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바, 복지증진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라는 개념의 중요 요소로 인정한 정신적·신체적 손상 부분은 장애 개념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 개념의 확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이를 장애인의 권리침해 및 인권침해, 학대 관련 범죄, 차별행위 등에 관한 신고의무, 취업제한, 벌칙 적용 등의 조항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법 집행 시 명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둘째,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엄성, 평등 실현, 고유성, 자기결정권, 참정권 등 각종 권리를 조항별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책

마련 의무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는 이미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위 규범인 법률에서 다시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며, 일부 추상적 개념의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정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제정안에서는 정의 조항에서 ‘탈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기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37조제1항제4호, 제66조제4항, 제87조제1항 등에서 재차 사용하고 있는데,

‘탈시설’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점과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에 관한 첨예한 찬·반 대립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제정안에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넷째, 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적절한 경제생활과 주거생활 보장, 노동권,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재 장애인등록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 장애인과 미래세대의 장애인이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범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다섯째, 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대한 조정,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지예산, 단체소송 등의 제도 및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신설에 관한 내용, 그리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체·보완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장애인위원회, 국가장애연구원,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등에 관해서는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 여부,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 가능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

특히,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기구는 정부 부처의 기능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으며, 그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등 구성원을 장애인 과반수로 하는 부분은 국가의 정책 결정권을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형태로 확대될 경우에는 정부의 기능이 재구성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음. 예컨대, 노인 정책, 실업자 정책, 근로자 정책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원구성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57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2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62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37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591호),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163호) 등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부분이 있음.

3. 관계 부처⁴⁾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함.
- 다만, 제정안 중 국가장애인위원회(안 제3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제38조), 학대 관련 규정(안 제4장) 등 다수 조문이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제정안 부칙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현재 발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상호의결을 전제로 하여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기획재정부(신중검토)

- 장애인지제도 도입, 전담 조직설치, 기금 설치, 재량사업 의무화 등과 관련하여 타법과의 정합성, 재정 여건 등 고려 시 현 체계 유지 필요
-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등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미 지원 중인 점도 고려

4) 그외 관계 부처 의견은 주요 내용별 검토 중 해당조문 부분에서 별도로 소개함.

다. 장애인 관련 단체⁵⁾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장애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법안인지 혹은 「장애인복지법」을 두면서, 신설되는 법안인지 명확하지 않음.
- ‘탈시설’을 ‘지역사회자립’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상세 조문 추가 필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미인지, 별도의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검토 필요
- 국가장애연구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의 재원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사용한다는 것인지 구체화 필요
- 제정안은 국제조약을 근거로 ‘탈시설’을 명시하고 이행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탈시설 용어의 사용은 정책의 실질적 주체인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보호자 등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중증 및 발달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시설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희망하고 있는바, 신중한 재검토 요구
- 안 제33조(훈련 및 재활의 보장) 관련, 훈련 및 재활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와 지원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
- 안 제48조 (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의무 등) 및 제52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관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필요
- 안 제86조(노동권 보장) 관련, 일반사업장에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 경험과 직업 훈련,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호고용을 일방적으로 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하고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안은 제1조 목적규정을 통해 동 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이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고, 적합한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

□ 통상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별 조문을 해석·집행할 때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지침으로 기능함.

따라서 목적규정에 사용되는 단어, 문구 등의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목적규정이 해당 법률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명확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음.⁶⁾

□ 그런데 제정안의 목적규정에서는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 한다는 다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6) 국회사무처. (2024). 법제기준과 실제.

- 즉, 종식되어야 하는 ‘시설’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 기술된 측면이 있어 보임.

□ 또한 ‘시설’이 뜻하는 바가 제정안 제2조제6호의 ‘탈시설’ 정의⁷⁾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시설수용 종식’에 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관련 단체인 참여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목적규정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7조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복지시설의 공익성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8)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서비스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장애서비스를 지원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권리침해”란 장애인 학대 및 폭력행위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지예산”이란 장애인의 평등권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6.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7.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 등 치사상)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 타.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 파.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하. 제10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 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 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 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8.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 통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말한다.

□ (안 제2조제1호 장애, 제4호 장애인권리침해, 제7호 장애인권리 침해관련 범죄) 제정안에서는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인권침해 및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 등의 객체로 보고 있음.

□ 장애란 복잡하고 다차원적 개념으로 최근에는 개인의 손상에 기준을 두고 있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⁹⁾

-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란 누구나 손상과 같은 신체상 문제로만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제약에 의해서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 이는 기존 의료적 모델에서는 장애로 보는 사람이라도 이를 보완하는 사회적 시설이 있다면, 장애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한편,
- 의학적으로는 장애가 아니더라도 ‘계단만 있는 건물’,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 ‘자막 제공 기능이 없는 TV’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적 불편함이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임.¹⁰⁾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문과 목적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모델에 따른 장애 개념을 반영하고 있음.

9) 세계보건기구. (2012). WHO 세계장애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기획총서 I.

10) 국가인권위원회. (2007).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제정안의 취지는 장애를 사회·환경적 요인과 신체·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에 의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여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장애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손상이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른 장애의 개념과 조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장애의 개념에 손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 개념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제정안에 따라 장애 개념이 달라지게 되면,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의 객체 역시 그 개념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제7장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상이 다소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임.

- 제정안에서는 ‘장애인권리침해’를 장애인학대, 폭력행위, 인권침해,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권리침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의 개념 중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처벌적 측면에서는 그 범위를 다소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형벌 명확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개념 확대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벌칙 규정¹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처벌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제정안 제2조제7호의 각 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침해관련 범죄’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과 동일함.

□ (안 제2조제5호 장애인지예산, 제6호 탈시설, 제8호 자립생활)

장애인지예산과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각각 제정안 제11조(장애인 지 정책 및 예산조치)와 제19조(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

다만, 제정안에서는 ‘자립생활’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 통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는 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공동발의, 의안번호 제336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립생활의 정의와 동일하다는 점, ② 자립의 의미를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는 것”으로 표현하여 외부 도움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미론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37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591호)에서는 ‘지역사회 자립’을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3. 국가장애인위원회, 지역장애인위원회

제3조(국가장애인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위원회는 민간위원 대표 1인과 정부위원 대표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2인 및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중 1인 및 비상임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정책의 개발·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지 정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국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① 국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4.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시민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 ② 위원장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⑤ 국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③ 위원장은 장애인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인원·채용자격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무처)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장애인 정책 기획이나 운영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가운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상근직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장애인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을 심의·조정하고 장애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을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 ③ 지역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 지역의 장애인지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사회보장급여 결정에 대한 조정 및 권고) ① 장애를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각 법령에 따른 급여 결정 또는 급여 대상자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보되, 관련 법률이 이의신청 제도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따른다.

② 보장기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장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당 법률이 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종료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⑤ 보장기관과 신청인 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장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회보장급여 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보장기관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와 보장기관은 조정절차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필요한 진술조력, 의사소통 지원 및 법적 대리 등의 조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신청인은 제52조에 따른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조정절차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3조 국가장애인위원회) 제정안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며, 관련 정책 이행의 감독·평가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¹²⁾ 제정안에서는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원활한 부처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이와 유사한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¹³⁾ 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¹⁴⁾와 같은 경우는 국

12)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4) 「지방자치법」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중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및 평가까지 하는 기관의 구성을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사실상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제6조에서 사무처를 두도록 하면서 별도로 위원장이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다고(제5조제3항) 하는 것은 조직 체계상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업무상 장애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 부처간 업무 조정 등이 혼합되어 있어 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 관계 설정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실 역할이 관계 부처 간 정책조정인 점 등으로 볼 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와 같이 국가장애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안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제정안은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위원장

이 사무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파견은 기관 밖의 인력을 활용하는 예외적인 인사제도로써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일방의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을 저해하는 등 인사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안 제6조 사무처) 제정안에서는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¹⁵⁾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자문위원회 등으로서, ①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를 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소 엄격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이 같은 사무기구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는 입장임.

□ (안 제7조 지역장애인위원회, 제8조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대한 조정 및 권고) 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및 장애인지예산을 심의·조정하고, 장애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지역장애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제정안 제52조제1항제2호)의 장을 포함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수이어야 함.

특히, 제정안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¹⁶⁾를 신청한 사람이 급여 결정 또는 급여 대상자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이 경우 각 법률에서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으면, 그 조정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¹⁷⁾에 따르도록 하며,
- 조정 신청 전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면,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조정’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여 그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¹⁸⁾

사인 간의 분쟁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공적급여 등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행정 처분적 성격이 있어 조정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의 지역장애인위원회는 사실상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인적구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심의·조정, 심사청구,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대한 조정 등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8) 국회사무처. (2024).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4. 장애인권리보장의 날과 장애인권주간

제9조(장애인권리보장의 날과 장애인권주간) ① 장애인의 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권리보장의 날로 하며, 장애인권리보장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권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권리보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를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권리보장의 날’로 정하고, 이후 1주일을 ‘장애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4조¹⁹⁾에서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주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에 의한 ‘장애인의 날’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 국민들에게 친숙하다는 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사 기념일의 명칭(어린이 날, 노인의 날 등)과 국제적으로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칭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정(매년 6월 22일)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

19)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바, 제정안의 “장애인권리보장의 날”과 그 의미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 조치 등

제11조(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 조치 등)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기획, 수립, 시행, 평가되는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제거하는 등 장애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u> 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정책 또는 예산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안에서는 법령 등에 따른 각종 정책 및 제도, 예산 등이 장애인의 권리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장애인지예산) 제정안 제2조제5호에서는 장애인지예산을 “장애인의 평등권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집행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1조에서는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장애인지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애인지예산”이란 장애인의 평등권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41조(장애인지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장애인지예산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에 있어 장애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은 장애 영역에 대해 동정적·시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장애인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분석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즉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가 예산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예산 제도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고려하도록 하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장애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²⁰⁾

다만, 장애인지예산은 국가예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립에 있어서는 제정안 제41조²¹⁾에서와 같이 장애인지예산 제도만

20) 김용탁. (2010). 성인지 예산 제도와 장애인지 예산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1)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41조(장애인지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장애인지예산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심의

을 위한 보건복지부예의 제출이라는 별도 절차가 아니라, 「국가재정법」상 기본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바, 장애인지예산의 요구서는 다른 예산과 같이 매년 5월 30일에 기획재정부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²²⁾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성인지예산 제도처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률에 예·결산서 작성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참고자료 1: 성인지예산 제도에 따른 재정 관련 법률 조문).

한편,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도입 목적 및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성인지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등과 같은 유사한 제도들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지예산 제도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 또한 부족하므로, 국가재정 제도로 도입에 앞서 해외운용 사례 비교, 지방자치단체 단위 시범사업을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장애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학계의 일치된 정의는 찾을 수 없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평등을 위하여 시행 중인 법령, 정책 및 실무 관행의 영향을 규명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22)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음.²³⁾

다만, 장애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657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제3장에서 장애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작성방법 및 장애영향평가위원회, 장애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장애영향평가 교육 등 장애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일적이고 일관된 평가 방법에 관한 기준이 함께 확보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은 장애영향평가 실시 의무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법률 조항 또는 위임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최보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장애별 구분 통계 산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장애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 유형에 따른 정책 및 서비

23) 장민영. (2020). 영국의 장애영향평가 법제 현황 및 시사점. 해외법제리포트, 한국법제연구원.

스 수혜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²⁴⁾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 통계를 작성할 때 장애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한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장애 정책 실시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통계청에서는 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인적 통계에서 장애별로 구분하는 통계를 산출할 경우, 모집단 확보 및 민감 정보로 인한 응답률 저하 등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 작성에 있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²⁵⁾

24)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정책17-11.

25) 통계청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별로 구분하는 통계를 지정하고 관련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6. 장애인의 권리보장

제13조(존엄성의 존중)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법 앞의 평등 실현) 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가지고 향유하며, 사회참여의 모든 기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로 부여되는 자격의 취득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요구하는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고유성의 보장) ① 장애인은 농문화 등을 포함한 장애인 고유의 정체성과 다양성 등을 인정받고 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고유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① 장애인은 폭력과 학대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 및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여야 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장애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① 장애인은 장애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결정과 실시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정착에 대

한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공적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비밀투표, 물리 및 정보 접근성 보장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투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① 장애인은 국가의 공적,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집회,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적,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의 참여, 장애인단체의 결성과 가입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누구든지 장애인이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하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3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접근권 및 의사소통의 보장) ① 장애인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어 지원, 문자통역 지원, 점역 지원, 화면해설 지원, 읽기 쉬운 자료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장애인이 디지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법접근성의 보장) ① 누구든지 장애인이 사법 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참여 절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 절차보조 등의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고 동등한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 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장애친화적인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국가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모든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① 장애인은 주거, 건강 및 재활, 교육, 여가·체육·문화, 정보 등의 삶의 제반 영역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생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장애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및 각종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8조(출산·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모든 결정에 스스로 선택할 권리 및 재생산권리를 가진다.

제29조(가족 및 가정 구성의 권리 보장) ①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가족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자유롭게 재생산을 선택할 권리와 연령별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하여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① 장애여성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①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장애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이 자유로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학대 및 방임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노인의 권리 보장) 누구든지 장애노인 지원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장애노인이 자유로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훈련 및 재활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

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 및 확대하여야 한다.

제34조(통계와 자료 수집) ① 국가는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분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이 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윤리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35조(다중적 차별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① 장애여성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²⁶⁾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적 차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²⁷⁾ 누구든지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장애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이 자유로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다중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등에 기초한 정책 개발, 예산 편성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다중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유사 중복 서비스 배제 등을 이유로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제83조(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에 따라 개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소수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생빈도가 낮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제정안 제30조제1항과 유사내용 중복

27) 제정안 제31조제1항과 유사내용 중복

□ 제정안은 ‘제2장 장애인의 권리보장’에서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존엄성, 평등, 고유성, 자기결정권, 참정권, 의사결정에 참여, 탈시설, 정치와 공적생활 참여 등을 각각 개별 조문으로 구성하여 조 제목에 권리 명칭을 명시하고, 대체로 각 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한 후, 이하 조항에는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책 마련·조치 강구 또는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보호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개별적·구체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와 정부의 정책집행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별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13조(존엄성의 존중), 제14조(법 앞의 평등 실현), 제16조(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20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제21조(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제22조(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제23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이상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재차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격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²⁸⁾

- 제17조(자기결정권) 장애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전적 행동 우려가 있는 등 일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자기결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므로, 장애인의 보호자 등이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음과 같은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정착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8)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탈시설’은 1960~1970년대 미국, 영국 등에서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운동’을 명명하는 용어로 등장하였음.

국내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동정·시혜 관점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만이 아닌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방지하고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이전시켜 통합된 환경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명시되었으며, 이를 해석·설명한 일반논평 제5호에는 협약 당사국의 탈시설화 전략 및 계획 미비가 지적된 바 있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 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 (2017)

12. 23(1)조는 나아가, 자기의존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에서 모든 장애 아동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다수의 장애 아동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당사국에 탈시설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 아동이 가족, 친척, 위탁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15.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지난 10년간 19조의 이행 진전 상황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19조의 목표·정신과 이행 범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아직 남은 장벽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e) 탈시설화 전략과 계획의 미비 및 시설 환경에 대한 지속적 투자

또한 최근에는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탈시설화’로 번역하여 ‘시설을 나와 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만을 탈시설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 등(시설 소규모화 또는 시설 내에서의 개인 선택권 보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등장하였음.²⁹⁾

다만, 이러한 ‘탈시설’ 용어를 법률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³⁰⁾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한 바 있으며, 장애인과 그 보호자 사이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9) 「유동철. (2021).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 (70), 269-292.」

30) 동 제정안에서는 ‘탈시설’ 용어를 제2조제6호, 제19조, 제37조제1항제4호, 제66조제4항, 제87조제1항 등에서 사용하고 있음.

< ‘탈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 >

구 분	주요 내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은 시설에 가둬 격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므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 시설은 배타적 공간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 높음 •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 필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 탈시설을 강요하지 말고 주거 형태를 늘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부모들에게는 시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자립주택에 살게 하면 시설에서보다 더 많은 인권 침해 발생 우려

- 제35조(다중적 차별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동 조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0조(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제31조(장애아동의 권리 보장)의 일부 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30조(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① <u>장애 여성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u>	제35조(다중적 차별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① <u>장애여성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u>

제31조(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① <u>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u> 누구든지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장애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이 자유로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적 차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u>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u>누구든지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장애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이 자유로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

7.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38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목표, 세부내용 및 추진 방법
2. 이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 필요 사항
3. 제34조제1항의 이행 및 이행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제4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지예산의 수립 및 자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6.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위원회는 매년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각 부처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 증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역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도 5년마다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기초로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각 종합계획에 연계하여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계획과 정책 간 연계를 통해 각 부처의 장애인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을 위한 연도별 계획이 아닌 별도의 지역장애인종합정책계획을 또 다시 5년마다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가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 중앙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 소관부처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국가장애연구원,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제44조(장애 관련 연구의 진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권리옹호 및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연구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연구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하여 장애인 권리보장특별기금(이하 “특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기금 운용 계획 수립, 특별기금의 자원·용도·운용·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44조 국가장애연구원)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복지와 관련한 조사·연구·평가 등을 위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국가장애연구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³¹⁾이 설치되어

3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제정안에 따른 국가장애연구원의 연구과제 및 수행 사업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제44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은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 보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유사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현재 운영 중으로, 조직, 인력 예산 등 중복 투자 우려가 있는바,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세 감면의 경우는 개별법 근거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제정안에서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 제46조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등) 제정안의 목적 달성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하는 특정자금으로,

예산의 경직성을 벗어나 탄력적이고 지속이며 안정적인 자금운용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예산과 비교할 때 특정수입과 지출 간 연계가 강하고, 집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인정되는 점³²⁾을 고려하여 그 설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같은 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³³⁾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제정안에 기금 설치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재정법」 [별표 2]를 개정하는 후속 입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국가재정법」은 기금 설치에 대한 심사 요건으로 기금재원이 목적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신축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새로운 기금의 설치가 효과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³⁴⁾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기금 신설의 필요성에

32) 국회의정연구수원.(2024). 예결산검토 표준교재 기금.

33)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3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특별기금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기금 설치에 관한 입법례에 따라 기금의 재원, 기금 관리 주체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안에서와 같이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삭제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
3. 기금운용수익금
4.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여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제외한 장애인의 복지 영역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의 집행’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의 기금신설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신규 기금 설치에 곤란하다는 입장임.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총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9.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관련 사항

제4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또는 폭력행위
2.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인격, 명예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정서적·언어적 학대 또는 폭력행위
3.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장애인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성적 학대 또는 폭력행위
4.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장애인의 재산, 금전 등을 착취·횡령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장애인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6. 장애인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장애인을 이용하는 영리행위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
8. 장애인의 의사에 부합한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제한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9. 그 밖에 제4장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권리침해

제48조(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권리침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 또는 성범죄, 제47조(제7호는 제외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권리침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5.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의

- 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19.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등 교직원 및 강사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5.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의 관련 사항 종사자
 2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밖에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관할 지역의 제52조 따른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폭력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 권리침해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52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옹호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긴급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이하 “장애인권리옹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2.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이하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를 통할하고 지역 및 관계 기관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이하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및 구제 등 구체적인 권익옹호활동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군·구에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군·구에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인의 연령 또는 성별 등에 따라 특수한 권리옹호가 각별하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법인에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장애인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과 상담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 ⑦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운영) ①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는 센터의 장, 상근 변호사 5명, 상담원·조사원·연구원·사무원 10명 등 20명 이상의 상근 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②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는 센터의 장, 상담원·조사원·연구원 등 10명 이상의 상근 인력을 두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상근변호사를 둘 수 있다.
- ③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 중 5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피해장애인 구제 및 권리옹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 등) ①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대한 지원
2.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홍보, 실태조사, 자료 발간
3.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연계·협조체제 구축
4.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보급
5. 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신고 및 조사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 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6.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소송 및 기타 법률지원활동
7. 장애인권리옹호센터 근무자에 대한 직무교육
8. 제7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권리옹호와 관련된 업무

②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 응급조치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3.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 가족 및 인권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권리옹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가 된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5.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6.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및 조사
7.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소송 및 그 밖의 법률구조활동 지원
8.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서비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업무

③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모든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위해 각자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장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옹호하여야 한다.

제55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책무) ①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옹호를 위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중립성 및 독립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감독권한을 넘어서는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④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 권리보장과 옹호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건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사법경찰관의 파견 등) ①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의 조사, 긴급조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장에게 소속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에게 요청된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의 장은 그 소속 경찰서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경찰서는 해당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의 장은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조사 동행의무 등을 명시한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발생 시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지원 상담소에 연계한다.

제66조(권리침해 모니터링 등) ①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권리침해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등의 장 또는 관리인은 방문과 모니터링에 협

조하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은 장애인복지시설등의 직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하 “시설장애인”이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면담하는 때에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은 시설장애인에게 탈시설에 관하여 의사를 물어볼 수 있으며,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시설장애인이 거주전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게 하는 경우에 제5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침해 모니터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신고 및 조사) ① 제47조에 따른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이 제66조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시설에서 신고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 본다.

- ②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 권리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제47조제7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등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 또는 성범죄, 제4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리침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에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할 행정청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할 행정청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인권침해 행위 현장에 동

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장애인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쉼터(이하 “장애인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의 긴급보호

2. 피해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정신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③ 장애인쉼터의 보호기간은 긴급보호를 위한 일시적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역 사회 내 장애인 지원을 하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쉼터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장애인의 배우자, 그 밖의 가족을 함께 생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지정하여 장애인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장애인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이용기간,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침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 그 가족 및 장애인권리침해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이하 “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장애인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장애인 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권리침해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

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③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권리침해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력(이하 “장애인권리침해 범죄 경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애인에게 장애인권리침해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권리침해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권리침해 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장애인 권리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4장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옹호’ 중 제47조(금지행위), 제48조(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의무 등), 제49조(불이익조치의 금지), 제50조(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 등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2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제54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 등), 제69조(응급조치), 제72조(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제74조(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등), 제75조(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 제77조(장애인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등은 사실상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규정³⁵⁾을 이관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장애인학대를 포함하는 개념인 ‘장애인권리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존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대신하여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

3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9(금지행위),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등

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2조제4호에서는 ‘장애인권리침해’에 대해 ‘장애인 학대 및 폭력행위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정안의 취지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 등의 폭력이나 가혹 행위 등과 같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장애인 학대행위 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서비스 이용 권리 등을 실효성 있고, 폭넓게 보장하고자 취지로 파악됨.

□ 다만, 개별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8조(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의무 등)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 장애인의 권리침해 발생 등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권리침해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히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장애인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더 강화된 신고의 무까지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제정안 제111조제2항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침해’를 장애인학대, 폭력행위, 인권침해,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권리침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다만, 신고의무 대상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는 제외)

따라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실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51조(긴급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미 제48조에서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기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시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신고를 접수한다면,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동 조항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긴급이라고 표현하여 전화신고용 번호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적인 규모의 전화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대상인 장애인의 권리침해는 그 범위가 불확실하고 긴급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운용 중인 신고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제53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운영)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 인력의 수 및 자격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인력 >

구분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
인력의 수	• 20명 이상 상근인력	• 10명 이상 상근인력
인력기준	• 센터의 장, 변호사 5명, 상담원, 조사원, 연구, 사무원 10명 등 • 직원의 5분의 1 이상 장애인	• 센터의 장, 상담원, 조사원, 연구, 사무원 등 • 직원의 5분의 1 이상 장애인

일반적으로 조직 신설 규정의 경우, 담당 업무와 기관장에 관한 사항 정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구성방안은 현실에 맞게 적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 대부분의 형태임.

제정안 제52조제7항에서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인력

의 수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내용 또한 개정 수요가 잦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경우, 설치 및 인력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³⁶⁾

- 제55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책무)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권한을 넘어서는 지시·간섭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한 국가로부터 부여된 장애인정책과 종합계획 등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바, 국가의 정책방향과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와 간섭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 제66조(권리침해 모니터링 등)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³⁷⁾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권리침해 여부

3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관한 의사를 물어볼 수 있으며, 거주전환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를 민간 비영리법인에서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³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방문하여 권리침해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시설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2건의 제정 법률안(각각 김예지의원, 최보윤의원 대표발의)³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절차(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대상자 선정→개인별지원계획→주거서비스 등의 자립지원서비스 제공)를 고려하면, 단순히 의사를 확인한 후, 곧바로 거주전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조사를

을 말한다.

38)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52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법인에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9) 의안번호 제1937호(김예지의원안), 제2591호(최보윤의원안)

요청할 수 있는바, 권리침해 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정신요양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거주전환지원 제공’보다는 ‘거주전환지원을 위한 연계’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68조(신고 및 조사)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 권리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해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를 민간 비영리법인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사인에 대한 출석요구 또는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감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사업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적·사법적 제재 또는 손해배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증거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조사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조사업무는 초기단계에서만 수행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직권조사는 관련 기관에의 직권신고 형태로 변경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감정’의 경우는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민간 비영리법인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72조(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쉼터’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59조의3⁴⁰⁾을 이관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 설치를 의무 설치로 변경하고, 대상 요건을 ‘장애인학대로 인한 피해’에서 ‘권리침해’로 확대하였으며,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용하도록 개편한 것으로 보임.

다만, 확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과 분리하여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비교적 최근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는 점⁴¹⁾, 이미 전국에 피해장애아동 쉼터 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 아동은 아직 심신이 성숙하

4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1)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2021년 7월이며, 2022년 1월 시행됨.

지 않아 절대적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쉼터’를 성인과 아동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현황 >

시·도	장애인 쉼터(개소)	피해장애아동 쉼터(개소)
서울	2	2
인천	1	2
경기	2	2
강원	1	-
대전	1	-
세종	1	-
충남	1	-
충북	1	-
대구	1	-
경북	1	-
부산	1	2
울산	1	2
경남	1	-
광주	1	-
전남	1	-
전북	1	-
제주	1	-
계	19	10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① 유사입법례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용어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쉼터” 보다는 현행과 같이 “피해장애인 쉼터”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② 성인과 아동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재 쉼터의 운영방법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③ 국비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의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장애인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신속한 예산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75조(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권리침해 관련 정보 공유 및 예방을 위해 피해장애인, 그 가족 및 장애인권리침해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는 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 비영리법인인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서 피해장애인, 그 가족 및 장애인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의 엄격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특히, ‘장애인권리침해행위자’의 경우는 제정안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장애인권리 및 인권침해자를 의미하는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정시스템의 구축 여부 및 적정요소 등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장애인 권리옹호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만, 제정안은 사회적 장애(안 제2조제1호) 개념에 기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다소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장애인 권리옹호센터와 관련한 내용은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장애인’ 개념의 비교 >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란 <u>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u> 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u>사람</u> 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또한 경기도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 대부분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이미 수행 중인 사항으로 예산 및 행정력 중복 투입이 우려되는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추가·보완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로, 김예지의원이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하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542호)의 경우는 제정안에서와 같은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관련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5771호)을 별도로 발의한 바 있으며(참고자료 3: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 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10. 단체소송 등

제57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는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인 이상의 장애인으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 받을 것
2. 정관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3. 단체의 구성원이 50명 이상일 것
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다수의 장애인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고 그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인권침해의 금지·중지·개선을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9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0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서. 다만, 같은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상대방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60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상대방에게 권익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62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단체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7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⁴²⁾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63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단체소송이란, 특정한 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그 단체가 대표하는 다수의 구성원을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그 밖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소송형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⁴³⁾

- 단체소송에 관한 편제는 “단체소송의 대상 등, 전속관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등, 확정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으로 양 법률이 동일함.

42) 문구가 중복되므로 수정 필요

43) 최광선. (2022). 현행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법평론, (28), 341-398.

< 단체소송 관련 입법례 >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u>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u> 다. <u>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u>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u>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u> 나. <u>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u> 다. <u>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u> 라. <u>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u>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u>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u> 다. 「<u>소비자기본법</u>」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u>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u> 나. <u>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u> 다. <u>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u> 라. <u>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u>
제71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관련 단체의 소 제기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가 다른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제정안은 앞서 살펴본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단체소송에 관한 편제와 동일한 구조로 양 법률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 또한 “단체소송의 대상 등, 전속관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등, 확정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단체소송의 경우는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및 소송의 공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적격 단체를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상시 구성원 수 5,000명 이상),

제정안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10명 이상 장애인의 제기 요청, 단체 구성원 수 50명 이상 등 다소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규모인지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참고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수를 50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⁴⁴⁾

4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요건 비교 >

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u>10인 이상의 장애인으로</u>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 받을 것 • 정관에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u>구성원이 50명 이상일 것</u>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u>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u>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u>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u>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u>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u>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u>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u>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① 제정안에 따른 사회적 장애 개념 및 그에 기반한 장애인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요건 충족 여부 등에 혼란이 우려되는 점, ② 장애인 인권침해는 동일·유사 피해사례가 많지 않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한 고발도 가능하다는 점, ③ 소비자단체소송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④ 단체소송 원고적격 요건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소 제기 우려 등을 이유로 단체소송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11. 방송 편성 등

제80조(방송 편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침해의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교육, 장애인의 권리옹호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권리 등에 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임.

- 다만, 제정안에서는 홍보영상의 송출 요청대상을 「방송법」 제2조제3호⁴⁵⁾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므로,

다양한 방송사업자를 포괄·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방송사업자’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유

45)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사업법례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전광판방송사업자’⁴⁶⁾도 이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의 동 조항과 유사한 입법례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송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의 송출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피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6)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 ① 정부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특정 주제에 관한 공익광고 송출을 요청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및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② 이미 「방송법」⁴⁷⁾에서 방송사는 공익목적으로 광고를 제작·편성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7)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2. 장애서비스 이용 및 권리 보장

제82조(장애서비스 지원의 원칙) ①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애서비스의 유형, 장애서비스의 제공량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장애서비스를 판정하는 경우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학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필요 정도 및 환경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3조(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의견,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서비스결정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4조(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소득보장 관련 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적절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서비스 이용자의 장애 특성 및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소득보장 제도, 자산형성지원 제도, 세제상의 조치, 할인 및 감면제도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5조(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주거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대료 지원, 주거수당 지급, 주택개조 비용 지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주택지원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서비스, 대안적 주거모형 개발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6조(노동권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지원, 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 해고 방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분리된 환경에서 고용하는 보호고용 및 직업재활 훈련을 지양하며,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지원고용 서비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 특성과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한 별도의 공공 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송 및 언론, 장애인 및 가정,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하는 교육, 문화예술,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7조(자립생활 권리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 이동지원, 평생교육지원, 주택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탈시설지원, 동료상담 및 동료서비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 지원, 장애인보조기기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 전반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장애인의 기본권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8조(건강권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고 또는 감염병 발생 시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지원·조력하는 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9조(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의 신청, 활용, 수리, 대여 및 구입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0조(안전대책의 강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방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안전사고 또는 비상재해 등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전쟁, 국지전, 생화학테러 등의 전시 상황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1조(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장애인, 경찰청의 실종 신고 후 48시간이 경과된 장애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인 무연고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단독신규호적취득자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종자 발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종장애인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인력은 실종 장애인 찾기, 실종 장애인 정보 관리, 실종 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 실종 장애인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장애인 또는 단독신규호적취득 장애인의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지문 및 유전자 식별정보를 채취할 수 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시설의 장 또는 의료인 중 사실상 실종 장애인을 보호, 감독하는 자는 실종 장애인임을 알게 된 즉시 경찰관서 또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유전자 식별정보 채취의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어통역, 문자통역, 안내 보조 등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3조(교육권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반교육체계 속에 통합되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 및 편의 제공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교육 과정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장애영유아가 학교로 진학하는 과정 및 장애학생이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장애아동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

련하여 장애아동의 언어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령기를 지난 중증장애성인이 교육과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통합되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과정에 제86조에 따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연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4조(참정권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국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어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참정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기를 개발·보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작된 선거 관련 안내자료 등을 배포하여야 하며, 선거 참여에 필요한 인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무경비를 국가 예산에 계상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소 및 입원 중인 장애인에게 참정권 및 거소투표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에게 거소투표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5조(이동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 지원, 대중교통수단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이동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거주지와 장애서비스 또는 장애인 권리옹호 지원 등을 제공받는 장소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6조(정보접근 권리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모든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 가능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가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 및 국제적 행사 등의 중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및 폐쇄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및 국제적 행사, 그 밖의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행사·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어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도서, 점자도서, 음성도서, 쉬운 도서, 화면해설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서비스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가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제작할 때 장애인이 직접 혹은 호환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제97조(방송 접근권 보장) ①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지원하고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의 업무 이외에 장애인의 교육 및 학습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및 방영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8조(의사소통 권리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특성과 방식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수어, 문자표기, 점자, 확대문자 이용가능한 멀티미디어 및 필기,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화면해설 지원, 구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의사소통(이하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 한다)의 수단 및 소통을 보조하는 제공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이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어, 문자표기,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 소통을 보조하는 제공인력의 유형, 자격, 지원 대상 및 범위, 교육·훈련·연수·통신중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보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장애인의 관람·참여·향유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활동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환경 개선 및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장려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0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기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수련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휴양시설, 여가교육시설, 여가학습장 등을 개선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1조(체육활동 권리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의사의 처방 또는 소견에 따른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발굴·육성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양성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인 발굴·육성 지원, 전문 체육인 과정 훈련 지원, 국내외 대회 참여 지원 등 장애인 체육인의 전문성 향상과 훈련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2조(장애의 발견과 국가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사회적 지원과 권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03조(장애인의 재생산권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차별적인 관행을 철폐하여야 하고, 성교육 접근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시기와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권, 피임에 대한 접근권과 결정권, 양육·입양을 위한 정보와 사회적 자원의 제공 등 재생산 권리 전반을 보장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인 장애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특성,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여성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접근 가능한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지원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제 104조(고령장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조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05조(돌봄·주간활동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돌봄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낮시간 동안의 보호 및 활동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을 지원(이하 “주간활동지원”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제 106조(장애인 가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특성과 가족유형을 고려한 종합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제5장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에서 장애서비스 지원의 원칙을 규정하고, 적절한 경제생활,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노동권,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접근권, 이동권 등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관부처 등의 노력, 개선, 시책 강구, 지원, 정책 실시에 관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장애서비스와 그 이용 권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별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82조(장애서비스 지원의 원칙), 제83조(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애서비스 판정 시 의학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필요 정도 및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의 경우(예컨대, 일시적인 부상이 발생한 상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장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정안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장애서비스이용자’의 개념과도 혼동될 수 있음.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서비스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장애서비스를 지원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①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재 장애인등록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재정소요 등에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

② 장애서비스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행정인력 및 재정소요를 필요로 한다는 점,

③ 장애서비스 판정 시 의학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필요 정도 및 환경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86조(노동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능력과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⁴⁸⁾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인식개선교육 보조 강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및 홍보’ 등과 같이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도 있으므로,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도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바, 이 같은 내용을 제정안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참고자료 2: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개요 및 복지일자리 직무 유형).

참고로, 동 조항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공동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2호)의 내용과 동일하므로,⁴⁹⁾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87조(자립생활 권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48)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조의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송 및 언론, 장애인 및 가정,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하는 교육, 문화예술,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개발·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립하게 된다면, 활동지원, 직업연계, 의료서비스, 이동지원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제정안은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임.

다만, 보장내용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소득 및 자산형성, 주택 등과 같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영역까지 열거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육성·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에 따라 사업비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센터의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공동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2호)의 내용과 동일하므로,⁵⁰⁾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제90조(안전대책의 강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을 위한 피난용 통로 확보, 점자·음성·문자 안내판 설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설치·운영, 안전문화활동 추진 시 장애인에

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 전반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장애인의 기본권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여야 한다.

게 적합한 의사소통방식 제공 의무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의사소통 방식 고려 의무

③ 기상청장: 「기상법」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 제공 계획 수립·시행 의무

④ 국방부장관: 전쟁, 국지전 등 전시상황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 수립·시행 의무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안전 등을 위한 제반 조치들은 대부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법」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법률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보다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국방부에서는 전시상황에 장애인을 포함한 주민을 대피시키고 보호하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이므로, 관련 계획 수립·시행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91조(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는 실종자 발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장애인 등의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지문 및 유전자 식별정보를 채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서는 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적용대상을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장애인, 경찰청의 실종 신고 후 48시간이 경과된 장애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인 무연고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단독신규호적취득자인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정안에서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① 지역장애인관리옹호센터에 실종장애인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는 현재 경찰 소관인 점, 제정안 제53조에 따른 지역장애인관리옹호센터의 인력구성(10명 이상의 상근인력, 직원 중 5분의 1 이상은 장애인)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장애인 등의 가족을 찾기 위해 지문 및 유전자 식별정보를 채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⁵¹⁾ 위반 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 최소원칙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93조(교육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 설치를 제한하여야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 제정안 제86조에 따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에 대한 연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실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애유형 및 특성 교육적 요구 등에 따라 적절한 학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특수학교 배치를 희망하거나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이 적합한 학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에 대한 연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5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고 포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94조(참정권 보장)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 시 수어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의 제공과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를 하며,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조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투표는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정안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선거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이는 제정안과 일부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제정안에서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또한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자 등록에 대한 지원은 출마 시 지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헌법상 평등권 측면에서 비장애인 출마자의 참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에 동의하나, 의무규정보다 재량규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6조⁵²⁾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선거권 보장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97조(방송 접근성 보장) 방송통신위원장은 ①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지원하고, 접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②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교육 및 학습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및 방영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③ 매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① 방송사업자의 수어·자막·화면해설 등 편성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이러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임.
- ② 「방송법」 제4조에서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교육 및 학습지원과 같은 특정분야의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교육방송(EBS)이 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인지에 관한 논

52) 「장애인복지법」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의도 있어야 할 것임.

③ 「방송법」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가장애인위원회에 의한 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민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제101조(체육활동 권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재활운동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체육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재활체육’ 보다는 법률 용어인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105조(돌봄·주간활동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돌봄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주간활동을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⁵³⁾에 따라 발달장애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 대해 각각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바, 제정안에 유사한 내용을 규정할 실익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5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간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의 정신질환자까지 확대되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⁵⁴⁾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과는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제84조(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관련, 개별 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으로 동 조항에서 ‘세제상의 조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85조(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제86조(노동권 보장) 제4항 및 제5항, 제88조(건강권 보장) 제3항, 제89조(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제95조(이동권 보장) 등과 관련,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지 않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만 두고 있음.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개념의 확대, 장애인지예산 및 장애영향평가 실시, 국가장애연구원 신설,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단체소송 허용 등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규정 및 그에 따른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하위 법령 마련, 시범사업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아닌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은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법령이 개별적으로 정비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 제정·개정·폐지의 효력이 그 법률 또는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의 외형상 변화가 없어,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일괄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석상 혼란과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바,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통해 최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⁵⁵⁾

아울러,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각각 ‘중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와 ‘중전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한 규정에 대한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법률로 판단되는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음.⁵⁶⁾

문 의 처
02)6788-5502

55) 국회 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56)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63호

<참고자료 1: 성인지예산 제도에 따른 재정 관련 법률 조문>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u>성별영향평가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성별영향평가</u>의 결과를 포함하여 <u>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u>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u>를 작성하여야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성인지 기금결산서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u>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u>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u>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u>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③ 그 밖에 <u>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성인지 결산서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u>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한다.	인지 기금결산서의 작	추가경정예산안을 제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에 관한 구체적인	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생	령으로 정한다.
목표, 성별 수혜분석	정한다.	략할 수 있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성인지 예산서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			
서류) 제33조의 규			
정에 따라 국회에 제			
출하는 예산안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9. 성인지 예산서			
제57조(성인지 결산			
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			
게 예산의 수혜를 받			
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행되었는지를 평가하 는 보고서(이하 “성인 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개요 및 복지일자리 직무 유형〉

□ 사업 개요

- (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일자리수) 31,546명('23년 대비 +2천명)
- (예산액) 2,227원('23년 대비 +154억원)
- * 예산의 99%는 인건비(임금, 퇴직금) 및 인건비성 운영비(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등)로 구성
- (근무기간) 1년 단위(1.1~12.31),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은 계속 참여 가능
-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및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수행기관

□ 연도별 일자리수(예산) 및 예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07	'10	'15	'20	'21	'22	'23	'24
일자리수	4,990	6,920	14,879	22,396	24,896	27,546	29,546	31,546
참여자수	3,986	6,717	15,084	22,609	24,507	30,330	32,446	-
예산	8,164	20,430	66,203	141,520	159,593	185,315	207,299	222,695

□ 일자리 유형별 현황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 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간	주40시간	주20시간	월56시간(주3~4일)		주25시간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 기관재학생	지적 및 자폐성장래인	미취업 안마사
주요업무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5개 직무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보조업무	출장안마 서비스 제공
근무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노인요양기관 및 시설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
월 급여	206만원	103만원	55만원		129만원	129만원
일자리수	7,640명	3,975명	17,294명		1,277명	1,360명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전체 80%

□ 2024년도 복지일자리 직무 유형

연 번	직무명	주요내용
1	대형서점 도서정리	도서 라벨부착 및 도서정리업무
2	우편물 분류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 (우편분류, 반송소인확인, 소인찍기, 작업장정리등)
3	사무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집계 등)
4	도서관 사서보조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라벨부착, 도서정리 등)
5	은행서비스 안내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의 업무
6	건강검진센터 지원	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및 검사실 이동·병원 안내업무
7	스포츠 이용시설 안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락커키 불출, 회원확인, 수건정리 등)
8	재래시장관리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 정돈 등의 업무
9	인식개선교육 보조 강사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강의 및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 해설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보조 업무
10	온라인콘텐츠 모니터링	온라인 내 인권차별, 불법 광고물, 저작물 등 관련 기관 신고 및 모니터링 업무
11	영유아 돌봄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조 (동화구연, 식사보조, 놀이 등)
12	어린이 동화 구연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업무
13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14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활동보조, 재활치료사업 등)
15	실버케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 지원 업무(식사, 용변, 개인위생, 이동보행서비스 등)
16	디앤디케어(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업무 (차량승하차, 식사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17	교통약자 승하차지원	서틀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약자 승하차를 지원하는 업무
18	반려동물돌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산책, 먹이주기, 케이지청소, 목욕 등)
19	캠핑장관리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업무수행 및 관련업무 보조
20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 등 지원 업무 (행사장 내·외부 시설 및 정리, 프로그램 지원, 이용객 안내 등)

연 번	직무명	주요내용
21	문화예술 활동	합창공연, 미술활동, 창작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업무 또는 보조 업무 수행 * 월 1회 이상 작품활동(전시, 공연, 행사 등) 및 결과보고서 작성
22	스포츠영상촬영 및 편집	스포츠선수의 연습 및 경기 장면을 촬영·편집하여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업무
23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양한 체육활동 분야에서 체육지도자(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를 보조하거나, 체육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업무
24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언어발달, 기초학습, 생활예절,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업무
25	발달장애인특화 활동지원사보조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배치되어 활동지원사의 업무(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를 보조하는 업무
26	호텔객실관리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
27	기부물품관리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
28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의 업무
29	버스청결관리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
30	공공자전거 세척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의 세척,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
31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이동보조기기 분해·세척 및 소독·조립과 간단한 경정비 업무
32	다회용품 세척 및 관리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 등을 통해 다회용품 대여, 세척, 소독 관리 업무
33	급식지원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34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매장정리, 상품진열, 카트정리, 온라인 주문상품 포장 등의 업무
35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계도 및 홍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36	세탁	오염된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업무
37	장난감 세척	장난감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기관에서 장난감 청결유지 업무 (장난감소독, 종류별 작동여부 확인 등)
38	문서파기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 (현장문서, 공장입고문서, 자체문서파기 등)
39	농업·임업·어업 관련 직무	여러 가지 간단한 농업·임업·어업 관련 단순 업무

연 번	직무명	주요내용
40	정리 및 수납	취약계층 가정, 공공기관 등의 정리 및 수납 업무 수행
41	방역·소독활동	다중이용시설 등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하는 업무
42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새활용) 또는 리사이클링(재활용) 제품 분류/적재/제작/판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환경분야 전반의 업무
43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언, 사회활동 지원
44	농아인-농아인 케어	일상생활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생활정보 및 복지정보제공, 민원처리 동행 지원
45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치료환경 관리, 환자 대기 및 이송돕기, 운동치료, 전문치료 돕기

〈참고자료 3: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학대신고 건수는 4,958건으로 2018년 3,658건 대비 35.5% 증가하였고, 장애인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친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 또한, 2022년 7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적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음.

현재 기존 법령은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실무에 적용이 어렵고 장애인학대 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등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범죄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장애인학대살해·치사 및 장애인학대중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범죄자와 장애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장애인학대범죄를 가중처벌

함(안 제9조).

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상 일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차.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카.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4조).

타. 법원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6조).

파. 임시조치 불이행,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강요행위 및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